

부산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제4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2.

노동자의 참여권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김정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김그루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2.

노동자의 참여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위험성 평가
- 근골격계질환
- 작업환경측정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산재예방
- 법령위반 신고 및 개선 요구 등
- 작업환경 개선사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의미와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현장을 개선
- 노동재해나 직업병을 예방하고, 생산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
- 매년 4차례 분기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노·사 교섭공간이자 합법적 투쟁공간
- 현장의 요구를 제기하고 그 힘으로 안전보건 요구안을 강제할 수 있는 합법적 투쟁의 공간
- 2020년부터 학교와 지자체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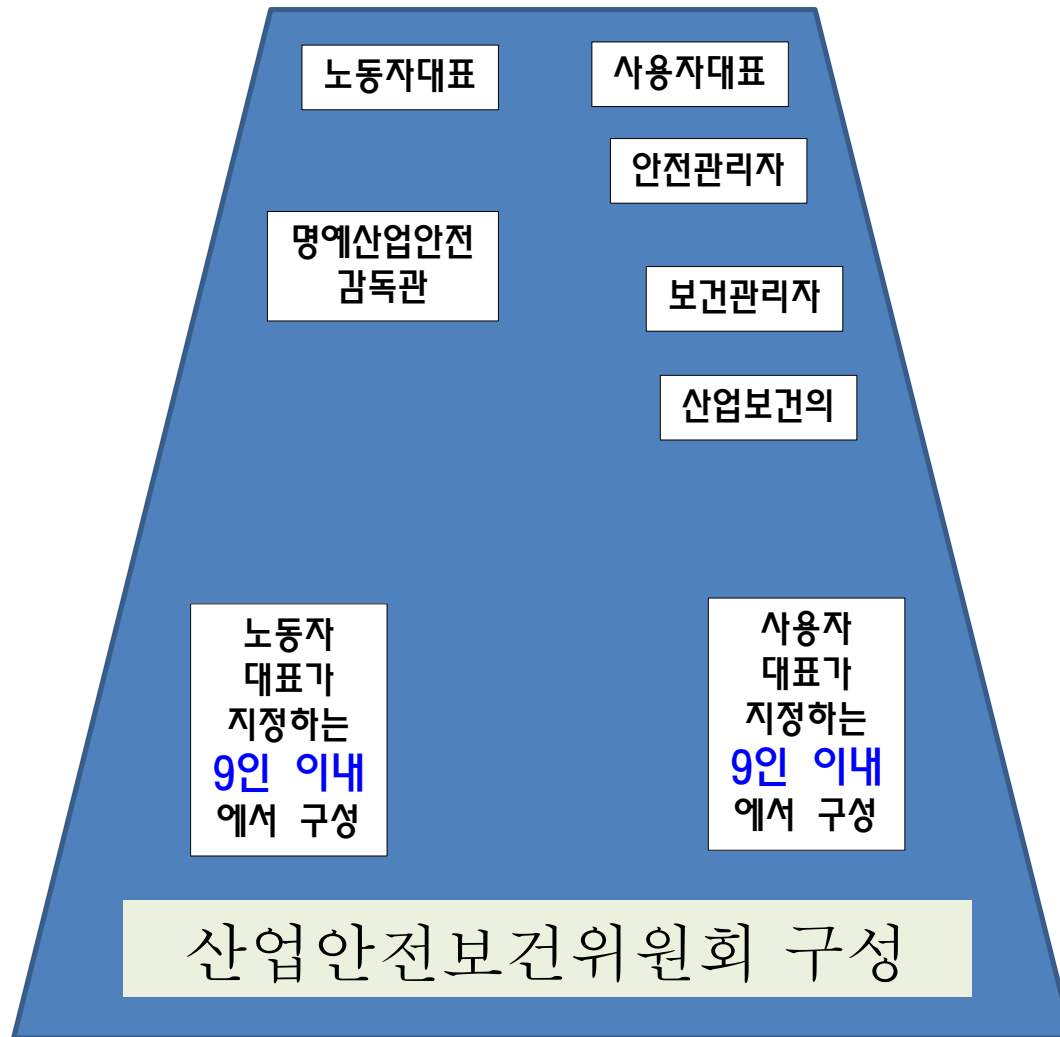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구성

구분	세부 내용
설치 대상	<p>- 상시 노동자 100명 이상 사업장(령 제34조) (유해·위험업종 : 50명 /사회복지서비스, 금융업 등 300명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트 등과 같이 본사와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을 사업장 기준으로 규정 • 학교는 인사권이 교육청에 있어 교육청을 1개의 사업장으로 규정
구성	<p>- 노사 동수/ 10명 이내 구성</p> <p>*노측 :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노동자</p> <p>*사측 :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p>
위원장	<p>- 노사 공동 위원장 가능</p>
중앙산보위 구성	<p>*본사에 중앙산보위 구성은 노사합의로 설치가능</p> <p>*공공운수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 부산지하철 노조 등은 직능별, 지역별 산보위와 중앙 산보위라는 중층적 구조로 운영</p>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구성

노동측위원

사용측위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회의

구분	세부 내용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회의 : 분기별 개최. 위원장이 소집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노사 각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회의결과 작성, 비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의결 및 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 -사업주 회의록 3년 보관 의무
회의결과 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보위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내용을 사내 방송, 사내보 게시, 정례회의 등 적절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신속히 공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심의,의결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회의결과 알리기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합안전 합의사항

안전	합의내용
외업내업 환경개선 대책이전건	노동조합, 환경보건부, 생산기반연구부, 위부기관 4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대표부서 외업 팀제1부, 내업 조합1부를 하기로 함 (일정은 추후 실무 논의 결정)
아드공장내 천장크레인 레일 및 배관라인 이전 공사건	설비안전부 - 배관라인 수평지대 등 장애물 제거, 통로허브 미끄럼 방지조치, 선형의장공장 일부 배관라인 이동조치(고정물 브라켓 일체, 20년 12월까지), 선형의장공장 상부정밀로 계단설치 장비보전부 - 크레인 점검시, 크레인 작동중지 및 상용확인 교육 실시 선형의장부 - 장비보전부 크레인 점검시, 즉시 크레인 중지조치 및 내부 열차이전, 공작물 담당자 지칭/홍보하여 안전 확보
아드내거탄(대) 안전상 조치건	남문 기존계단 위 합성크레탈 계단 시공 (20년 여름휴가 기간 중 공사 실시 및 완료) 조합2공장 위편 계단 미끄럼 방지 눈슬림 조치 및 난간 시공 (20년 7월 31일까지 완료)
에어부스 확대 설치건	PDC#1, PDC#2, 위입복지관, D인백식당 주변, 선수미 식당, MO#2식당, 노래생선센터, H인백식당 출회계소 설치 설치조치 설비건설부 - 관리조치 합업 생산조직 지원(생산운영) 작업장별 추가설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상 조합원 권의장소에 생산담당별 제작설치 및 운영한다
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자료 2건에 대해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홍보(20년 12월까지) ※노사는 HSE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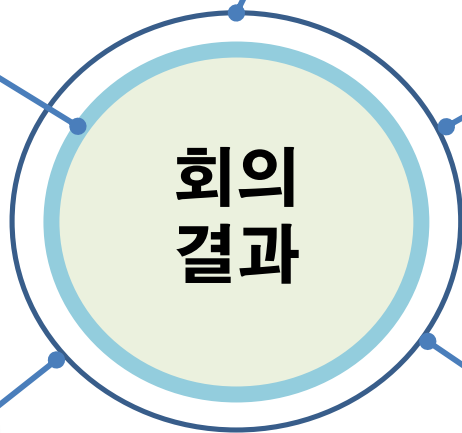
사내홍보물



게시판



정례회의



회의 결과



사내방송



조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위반시 과태료 (만원)		
			1회	2회	3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 1항)	법 제 175조 5항 제1호	구성하지 않은 경우(노사협의체구성 제외)	500	500	500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50	25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 4항)	법 제 175조 5항 제1호	사업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	250	500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 1항)	법 제 175조 5항 제 1호		150	300	500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안보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6조)	법 제 175조 6항 제 1호		50	25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현장체계구축 사례

4

거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관련

[안전총괄과]

◆ 건의내용

- 거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참여 관련
- 협의체 구성 여부와 회의 개최 현황 파악 및 사외 위원참여

□ 검토의견 : 검토예정

거제시 상시근로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시 근로자위원들의 동의하에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의 위원 참여는 가능

회의 참여시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거제시 상시근로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020. 2. 27일 구성하였으며

회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 개최하였음

향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거제시 상시근로자에 관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1990년대 초부터 중대사고가 연속 발생하고,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의 한계와 노동자들의 쏟아지는 요구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고 노동부가 위촉하는 노동자 대표성을 지닌 감독관. 산보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가능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일터의 안전보건에 관한 대부분의 활동에 참여가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내 감독관

*산안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노동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 업무 :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 사업장 감독 참여
 -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 :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개선 요청 및 신고
 -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
 -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시 참석
 - :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선임대상 사업장, 임기

- 제조업, 운수, 창고, 통신업, 광업 : 상시 노동자 100인 이상 사업장
 - 건설업 :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사업장
 - 기타산업 :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
-
-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 참석과 활동 전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내 감독관의 권한

- 사업장 노동자 대표 추천, 노동부 위촉
- 사측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거쳐야 함.
- 사측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하면 됨
- 사업장당 1명
- 직무상 사용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규정이 되는 경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격이 없음
-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사외(지역) 감독관

- 민주노총, 지역본부, 산별연맹, 산별연맹 지역대표기구 추천. 노동부 위촉
- 추천인원수 제한 없음
- 각 조직의 직접 고용된 상근활동가의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님. 지역본부 소속 사업장에서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하는 간부 위촉 가능
- 법률상으로는 산재예방 정책 건의, 홍보참여 등의 권한만 부여
- 현장 출입권이 없음

위 축 장

소 속 :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직 책 : 연합단체노동조합

성 명 : 김정열

귀하를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참여지원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합니다.

2020 년 01 월 31 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장





Asbestos 석면제거용기

작업방법 MANUAL

ASKO
작업장 WINDOW

주의사항 CAUTION

오른손
RIGHT HAND

왼손
LEFT HAND

Asbestos 석면제거용기

- 1) 작업시 손목...
- 2) 작업시...
- 3) 작업시...

국립안전연구원

학생들과 교직원
건강 위협하는
석면공사 강력 규

옥포중 사태
TIATG 나하고
구별하라!

학생들과 교직원
건강 위협하는
석면공사 강행
강력 규탄한다!

1급발암물질
학교석면 영터리 공사
경남교육청이
책임져라!

거제 옥포
석면
경남교육청이
책임져라!

교직원
안전 확인한 후
등교수업 실시하라!

학교석면 불법철거
고 발 장

- 석면추방거제연대 -



[“거제 옥포중 석면 위험 노출, 아이들 건강 위협”](#) 2020.09.08 | 경남신문

석면추방거제연대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옥포중학교 내부 공사 과정에 발생한 석면 오염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옥포중학교는 지난 8월 15~17일 3일 동안 1~4...



[거제 옥포중 방화셔터 설치 중 석면 노출에 '시끌'](#) 2020.09.14 | 오마이뉴스 | 다음뉴스

사후약방문이라도 다시 정밀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옥포중 석면 부분 철거에 대해 학기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우선적으로 해야할...

나 [거제 옥포중 방화셔터 설치 중 석면 노출... '시끌'](#) 2020.09.16 | 거제저널



[거제시민단체 "학교 석면 철거 과정서 가루 노출"](#) 2020.09.08 | 경남도민일보

거제 시민단체가 옥포중 석면해체 방화셔터 교체 공사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방식 탓에 석면 가루가 퍼졌다고 교육당국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거제교육지원청...

나 ["거제 학교 석면 철거 과정서 가루 노출" 시민단체...](#) 2020.09.09 | 부산일보



["석면 노출대책도 없이 강행" 경남 학교 공사 논란](#) 2020.09.08 | 오마이뉴스 | 다음뉴스

연대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8월 17-18일 사이 현장조사 활동을 벌였다. 옥포중의 석면 제거는 '글러브백(차단백) 비닐 보양' 방식으로 이뤄졌다. 석면 해체시 글러브백...

[\[경남/데스크 칼럼\] 끝없이 되풀이되는 학교석면 부실 철거](#) 2020.09.11 | 한국농어촌방송

이들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거제에서는 옥포중학교를 비롯해 5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을 했는데, 옥포중은 방화셔터 설치 작업 시 그로브 백(터널 백) 방식으로 석면...



["학교 철거 작업 중 석면 검출 대책 마련을"](#) 2020.09.08 | 경남매일

연대(이하 연대)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 기간 거제교육지원청은 옥포중학교를 비롯해 5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을 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여름 방학을 이용해 43...

나 ["학교 석면 철거 과정서 가루 노출"..경남교육청 ...](#) 2020.09.08 | 연합뉴스 | 다음뉴스



["안전 보장되지 않는 소규모 석면해체 공사 지양해야"](#) 2020.09.08 | 노컷뉴스 | 다음뉴스

백) 방식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름방학에 석면 철거 공사가 진행된 거제 옥포중학교는 방화셔터를 신설 교체하는 작업을 위해 방화셔터 주변의...



고소(고발)장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월 (사건에 따라 연장가능)
성명 김 정 열 (거제지역명예산업안전감독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경상남도 교육지원청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박 종 훈(경남교육감), 유영갑(거제교육장), 양재복(옥포중교장)	가동여부 : 가동[0], 휴·폐업[]
	연락처 055) 630-9260	상시근로자수 : (약)명
	사업장 소재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③근무지(소재지와 다른 경우 작성)	

고소 · 고발 내용	<p>■ 내용 2020년 8월 15일~17일 옥포중학교 석면 철거·해체 작업과 2020년 8월 22일 방화사다 설치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옥포중학교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되었기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p>
	<p>■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p> <p>※ 세부내용 및 증거자료 별도 첨부</p>

고소·고발인(대표) **김 정 열** (서명 또는 인)

2020년 9월 8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고소(고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고소(고발)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고소·고발인 연명부 작성 3. 대리에 의한 고소(고발)장 제출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정 2020.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작업중지권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은
생명권이다.



작업중지권 – 급박한 위험과 작업중지

① 사업주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 조치 뒤 작업재개 해야 함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② 노동자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 바로위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③ 노동부

•노동부 감독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의 작업중지 위반을 발견하면 범죄인지 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함 (산안감독관 집무규정 3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노동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산안법 52조4항)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은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자가 판단 기준입니다 (2020년 적용)

•재해가 예견되는 징후가 있었으나 사업주가 작업 중지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함 (집무규정 32조)

구분	작업중지	내용
급박한 위험	산안법 51 조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박한 위험에 즉시 작업중지. 노동자 대피 등 안전보건조치
	산안법 52 조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중지 후 대피할 권리 → 관리감독자 및 부서장 보고 → 안전보건 조치 •급박한 위험에 대한 합리성 판단은 노동자 기준 •작업중지 대피 노동자 해고 등 불이익 처우 금지
	산안법 53 조 (노동부 사용중지.작 업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안전조치 미비로 현저한 위험 발생 우려 시 사용중지, 대체, 제거, 개선 및 시정조치 → 사업주는 시정조치 사항 게시 → 시정조치 미이행 등으로 개선되지 않거나, 유해위험 현저히 높아질 경우 해당 기계, 설비 등 관련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명령 → 시정조치 완료 후 해제 요청 → 시정조치 완료 판단 시 해제

구분	작업중지	내용
중대 재해 발생	산안법 54 조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작업 즉시 작업 중지. 노동자 대피, 안전보건조치. 지체 없이 노동부 보고
	산안법 55 조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 있다고 판단 시 작업중지 명령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부분 작업중지 명령 : 해당작업, 동일작업 •전면 작업중지 명령 : 붕괴,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주변으로 산재확산이 된다고 판단 시
감정 노동	산안법 41 조 (사업주 및 노동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노동자에게 건강장해 발생,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조치 •노동자는 업무중단 전환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작업중지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법 제41조)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안전보건개선 계획은 산보위 심의의결 사항 (법 제49조)

- 감독관은 재해조사 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보건진단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 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 (집무규정 27조)
-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 계획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미 설치 사업장은 노동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함. (산안법 49조)

유해 위험상황 신고는 1588-3088

- ✓ 365일 24시간 신고 가능
- ✓ 사업장 소속여부 관계없이 신고 가능. 시민도 신고 가능
- ✓ 담당 감독관이 현장방문, 작업중지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
- ✓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산안법 제157조 3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작업중지 위반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회위반	2회위반	3회위반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동부의 시정조치 내용 게시 (법 제53조 2항)	법 제 175조 제5항 제4호	개선조치 완료 시까지	50	250	500
중대재해 거짓보고 (법 제54조 2항)	법 제175조 제2항 2호		3000	3000	3000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1조 2항)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업무의 일시적인 중단 또는 전환 등	300	600	1000
			벌칙		
급박한 위험시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자 대피 및 안전보건조치 미 이행 (법 제51조, 54조)	법 제168조 1호	사업주 조치 사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부장관 작업중지 명령 불이행	법 제168조 1호				
중대재해 현장 훼손 등 (법 제56조 3항)	법 제 170조 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법 제41조 3항)					

작업중지권 사례 - 대우조선 단체협약

제 70 조 (안전보건 규정 및 수칙)

- 1) 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교육시킨다.
- 2)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시설 미비 시 시설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
- 3)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시설 미비 상태에서는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
- 4) 2)항의 내용을 조합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합은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내용을 회사에 즉시 통보하며,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3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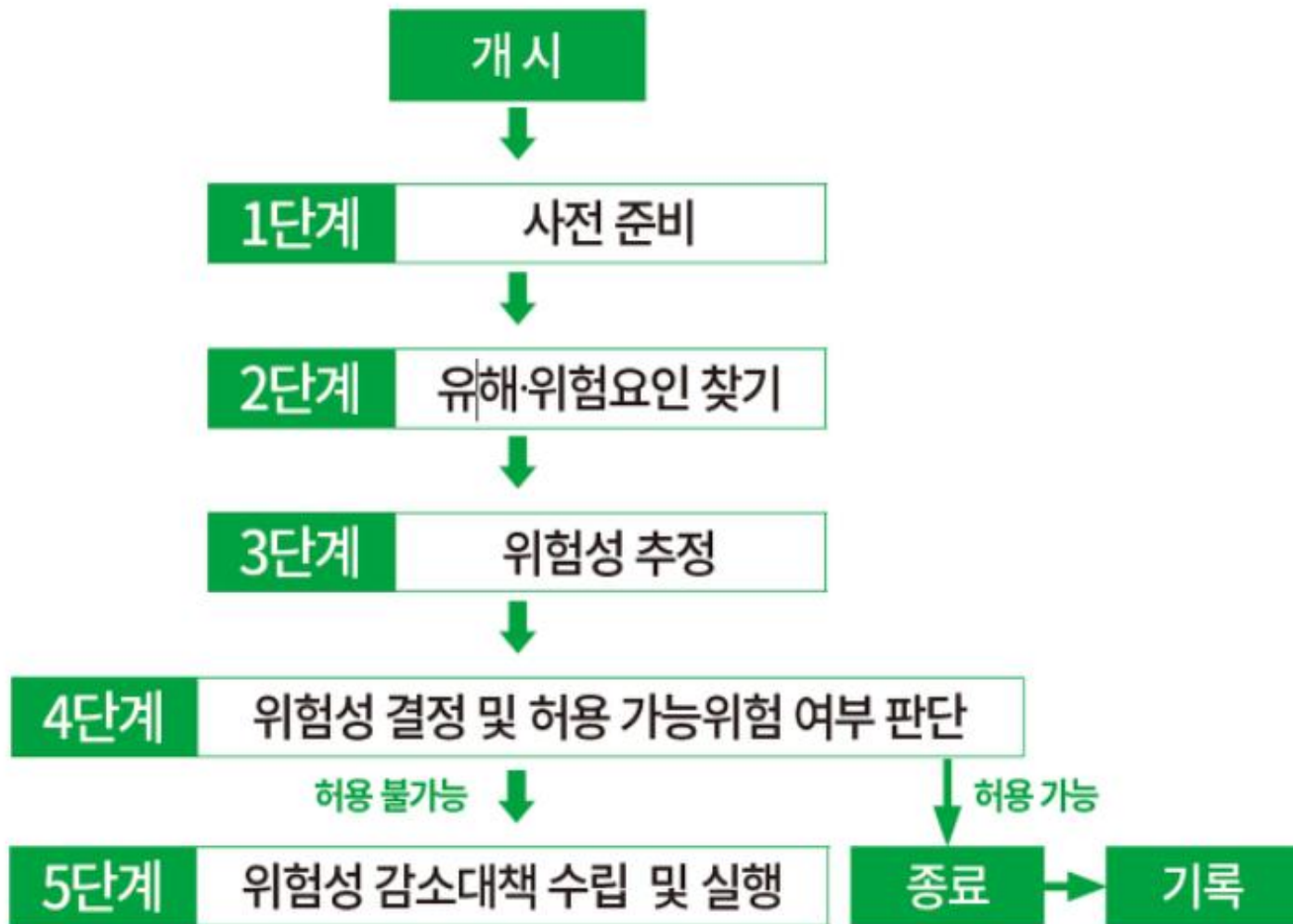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평가제도

<평가 시기>

- **최초 평가** : 최초, 전체 작업 대상
- **정기 평가** : 매년 1회 정기적 평가
- **수시 평가**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시, 작업장 설비, 작업자, 방법 및 절차 변경 시. 기계기구설비 정비 보수작업 시 등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36조)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36조)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 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요인과 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 산출



4.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위험성 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36조)

위험성 감소대책의 우선 적용 순위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 지급·착용 (최후의 조치사항)

※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할때 까지 위의 순서를 반복해서 실시 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 3단계 위험성 추정

강도 추정

구분	중대성	기준
대	3	사망 또는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는 업무에 복귀 가능 (완치가능))
중	2	•경상(병원치료)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1	•미미한 재해(비 치료)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

위험성 평가의 실시 - 3단계 위험성 추정

빈도 추정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발생가능성 높음. 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음. 안전수칙, 작업표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 필요 • 1일에 1회 정도 노출
중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주의하면 피해발생 가능성 있음,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미흡.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 존재 • 1주일에 1회 정도 노출(가끔)
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발생가능성 낮음. 가드, 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 출입이 곤란한 상태. 안전수칙, 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 가능 • 3개월에 1회 정도 노출(거의 없음)

위험성 평가의 실시 - 가능성과 중대성 추정 예시

위험 요인	가능성		중대성	
미끄러짐	3	미끄럼방지용 장화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실 바닥에 물기가 방치되어 있음	3	골절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2	미끄럼방지용 장화를 착용했으나, 조리실 바닥에 물기가 방치되어 있음	2	살짝 삐끗하여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1	미끄럼방지용 장화를 착용하고, 조리실 바닥에 물기가 없음	1	처치 후 바로 작업 가능한 경우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 가능성 X 중대성

5단계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기록 - 위험성 평가 종료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 요인 고시

노동자 참여 (산안법 36조 2항) : 2020년 신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시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위험성 평가 과태료 및 벌칙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위반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16조)	법 제 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 15조)	법 제 175조 제5항 제1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500	500	5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안전관리자(법 제 17조)	법 제 175조 제5항 제1호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보건관리자(법 제 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법 제 19조)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 시 제외			300	400	50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 제 62조)	법 제 175조 제5항 제1호		500	500	500
			벌칙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 64조)	법 제 172조	법 제 64조 1항, 2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성 평가 과태료 및 벌칙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벌칙**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제79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의 실시 - 현장체계 구축

2020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합의서

노동조합 안건 5)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보제공 건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측정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그 결과 및 현황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홍보한다.

구분	주관	모바일 개발 일정
1)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기획운영부	~'20.9월
2)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자료	환경보건부	~'20.12월

2020. 6. 10.

위험성 평가의 실시 - 현장체계 구축

투쟁속보

내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 스마트폰으로 확인가능

석면지도 공개에 이어 9월 부터 대우조선 사내 포털 사이트와 HSE 모바일 어플로 위험성 평가 결과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우조선지회가 전국 사업장 최초로 모바일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작업장의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조사는 되는지, 노동자의 참여는 있었는지, 개선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직접 유해요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12월까지 작업환경측정 결과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2020년 2/4분기 산안보 노동조합 안전5)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보제공 건>



전체노동자 정보제공

<http://mportal.dsme.co.kr/install.app.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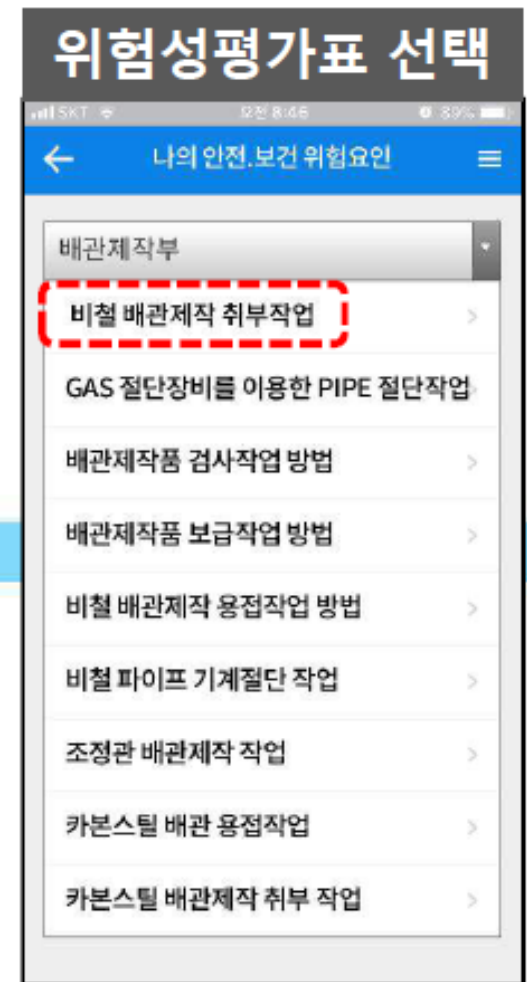
(단, 본인이 속한 부서나 업체에 한하여 정보공개)

위험성 평가
어플 QR코드



위험성 평가의 실시 - 현장체계 구축

(대우조선 20년 2/4분기 산안보 합의사항)



작업표준 확인

작업단위 세부

01. 자재준비(부재이동) 닫기

1. 작업대상 도면 검토
-호선 사양, 설계변경 여부, 자재(Pipe & Fitting류) 사양, WPS 확인
2. 자재준비

내용확인

나의 안전.보건 위험요인

배관제작1파트

비철 배관제작 취부작업

01 자재준비(부재이동)

02 취부작업

03 검사

04 운반

* 상시 위험 발굴 및 등록

위험 및 등급 확인/ 나의 위험등록

나의 안전.보건 위험요인

배관제작1파트

비철 배관제작 취부작업

01 자재준비(부재이동)

- 6 파이프 절단 면 날카로운 부분에 부주의로 인한 신체 접촉으로 베임사고 위험
- 6 단관 및 피팅류 이동 시, Lifting Hook 사용기준 미 준수로 인한 부딪힘 위험
- 6 크레인으로 운전 시, 리모콘 버튼(횡행/주행/UP/DOWN)을 두가지 이상 동시조작 시 부딪힘 위험

3 프렌지 보호커버 안쪽 부분을 칼로 제거 시, 손 베임 위험

위험요인 신규발굴

02 취부작업

위험요인 신규발굴

※ 신규발굴 위험요인은 전사공용 됩니다. 기존 위험요인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등록 하십시오.

등록자	신동욱 4갑
등록일시	2019-12-30 09:10

저장 닫기

등급세부 확인

나의 안전.보건 위험요인

위험성 평가등급

□ 위험성평가 일자: 2019-09-30

위험성평가: 6 등급

크레인으로 운전 시, 리모콘 버튼(횡행/주행/UP/DOWN)을 두가지 이상 동시조작 시 부딪힘 위험

□ 사고가능성(빈도): 2 등급
[2] 년 1회 정도 발생

□ 사고중대성(강도): 3 등급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복귀 가능)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스물기차게 싸워서 법제화시켰지...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골격계 질환이란?

한국의 최장의 노동시간과 고강도 노동은 노동자들의 골병으로 이어집니다.

이 골병을 <근골격계 질환> 이라고 부릅니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신청 노동자만 매년 7천-8천명이 발생하여, 직업병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법 제39조 보건조치)

제39조(보건조치)

이전조문 전체법령 다음조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흠(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행정규칙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법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56-666조

규칙	제목	내용
657조	유해요인 조사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증상 유무
659조	작업환경 개선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등 작업환경 개선
660조	의학적 조치	운동범위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이 나타나는 노동자에 대해 의학적 조치
661조	교육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 작업 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 유해요인조사, 결과, 방법 등을 해당노동자에게 알려야 • 근로자 대표 요구 시 설명회 개최
662조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0명 이상 산재인정 (5명 이상 발생으로 비율이 10%이상인 경우) • 예방관련 노사간 이견 지속된 사업장으로 노동부에서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명령한 경우 •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노사협의 거쳐 작성 시행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56-666조

657조 유해요인 조사

① 유해요인 조사의 실시시기

-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신규 사업장은 1년 이내 실시
-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 실시

임시건강진단에서 환자 발생. 산재인정 받은 경우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② 노동자 참여

- 유해요인 조사에 노동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노동자 참여시켜야 한다

③ 조사 방법 :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조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56-666조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65조)

- 노동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안내 표시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노조는 박스에 손잡이를 달기 위한 투쟁 전개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노동자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성 노동자의 경우 25kg . 여성 노동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를 말함 [노동부 질의회 시집 산보68070-749. 2003.09.05.]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근골격계 부담작업 11가지

구분											
부담작업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노출시간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노출빈도	-							하루에 총 10회 이상	하루에 총 25회 이상	분당 2회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신체부위	손, 손가락	목, 어깨, 손목, 손, 팔꿈치	어깨, 팔	목, 허리	다리, 무릎	손가락	손	허리	손, 무릎	허리	손, 무릎, 팔꿈치
작업지세 및 내용	집중적인 자료입력 작업 (마우스, 키보드 사용)	같은 동작 반복작업	· 머리 위손 · 팔꿈치가 용통으로 부터 돌링 · 팔꿈치를 용통 뒤쪽에 위치	구부리거나 비틀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힘	한손가락 집기작업	물건을 잡는 작업	물건을 드는 작업	· 무릎 아래 · 어깨 위에서 돌기	물건을 드는 작업	반복적인 충격
무게	-					· 1kg · 2kg 이상용	· 4.5kg	25kg이상	10kg이상	4.5kg이상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벌칙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벌칙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제 39조 1항 5호)	법 제 168조 1호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 167조 1항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반드시 짚어야 하는 것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증상 설문조사만이 아니라, 설비, 공정, 작업량 등 작업장 상황과, 작업시간, 자세, 방법 등의 작업조건도 조사대상입니다.
- 전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사, 개선 방안 도출, 설명회 개최, 예방관리 프로그램 협의)
- 11개 근골격계 부담 작업 고시는 정형적 작업 기준 고시 이지만, 비정형 작업(청소, 조리)등의 작업도 유해요인조사 실시 대상이 됩니다. 환경미화 노동자, 급식 조리 노동자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현장체계 구축사례

'18~20 사내 물리치료실 이용 실적

단위 : 건/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08.20 까지		인원/시설
	총 건수	일 이용자	총 건수	일 이용자	총 건수	일 이용자	
서문	15157	64.5	18625	79.3	12140	84.3	2명, <u>베드</u> 14개
PDC#2	15003	63.8	16745	71.3	9780	67.9	2명, <u>베드</u> 14개
<u>H센터</u>	5201	22.1	5854	24.9	4187	29.1	1명, <u>베드</u> 12개
계	35361	150.5	41224	175.4	26107	181.3	5명, <u>베드</u> 40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현장체계 구축사례

직업성 질환(질병) 사례 및 연구조사 사업

○ 사업 과제

(폐암)·기타 암으

청구인은 수임인에게 아래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 권한을 위임합니다.

○ 청구 내용

- 가. 요양 신청서
- 나. 조사보고서
- 다. 역학조사보고서
- 라. 판정서
- 마. 위원별 심의 소견서

위 가.~마. 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합니다.

-끝-

원 중

건강하게 일할 권
합니다.

드립니다.
정입니다.

보건부

조합원 동지 여러
먼저 힘들고 열악
다. 저희는 2020
조사 사업'을 진
니다.

○ 직업성 질환(질
대우조선은 고강
에 비해 높은 편
(질병)이 발생하
이에 저희는, 우
연구사업을 통하
건강하게 일할 권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1. 노동자 참여 (다단계 하청노동자 대표도 포함)

- 노동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시켜야
- 측정결과를 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 건강진단 실시 등을 하여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자 대표가 요구하면 설명회를 개최해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이 있음. 이에 측정기관의 선정도 산보위원회에서 논의결정 할 수 있음

2. 예비조사 참여

- 예비조사는 사업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조사임. 노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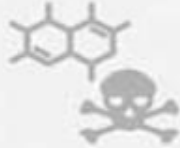
3. 하청노동자 공정의 작업환경 측정은 원청의 의무

- 원청은 다단계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경우에도 작업환경 측정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92종 (시행규칙 186조)

1. 화학적 인자 183 종



유기화합물 114종

115) 1)부터 114)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금속류 24종

25) 1)부터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산 및 알칼리류 (17종)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허가 대상 유해물질 (13종)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율

금속가공유 (1종)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물리적 인자 (2종)



소음
고열

3. 분진 (7종)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나무분진,
면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석면분진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 위반 과태료 및 벌칙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위반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4항 제6호	노동자 1명당	20	20	5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 175조 5항 제 13호		100	300	500
노동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노동자대 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 175조 5항 제 14호		500	500	500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	법 제 175조 6항 제 15호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 175조 5항 15호		100	300	3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자대표 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 175조 5항 제1호		100	300	500
			벌칙		
측정결과를 알리지 않고 개선조치 미 이행 (법 제125조 6항)	법 제171조 3호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 39조 1항	법제 168조1호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제 167조1항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원청의 안전관리책임



원청의 안전관리책임 – 의미와 필요성

- 자본가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위험을 외주화
- 사업장내에서 유해 위험작업, 고된 작업,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작업 대부분을 하청노동자 및 이주노동자들이 수행
- 비정규,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은 훨씬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보호 필요

원청의 안전관리 – 원청의 산재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64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원청과 1차 하청 사업주 구성
- 원청의 작업장 순회 점검
- 안전보건 교육장소 및 자료제공 지원 (다단계 하청 포함)
- 안전보건 교육 실시의 확인 (다단계 하청 포함)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또는 원청 시설 이용 협조 : 휴게, 세면 목욕, 세탁, 탈의, 수면시설
-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
 - 다단계 하청 노동자 참여 보장 원.하청 합동점검
 - 건설업, 선박건조업 2개월1회, 그 외 분기 1회
 - 원.하청 사업주와 원.하청 해당 공정 노동자 각 1명
(다단계 하청 포함)

원청의 안전관리 – 원청의 안전보건 정보제공

(산업안전보건법 65조)

-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정보 문서로 제공
- 폭발, 발화, 인화, 독성의 화학물질 or 혼합물 제조, 사용, 운반 or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또는 철거작업. 설비 내부작업, 질식/붕괴 위험작업
- 원청은 하청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실시 확인
- 하청이 정보제공 요구했으나, 원청이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하청은 해당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지체 보상 책임 지지 않음

원청의 안전관리 – 원하청 통합 산재관리

(산업안전보건법 10조)

- 하청 노동자 산재발생건수 통합 공표
- 사외하청, 다단계 하청 산재 포함
-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전기업
- 원청 노동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원청 노동자보다 다단계 하청 노동자의 사고사망 만인률이 높은 사업장

원청의 안전관리 –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직접 고용
- 위험작업 도급승인 및 재 하도급 금지 및 적격 수급인 선정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사업주 의무 준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정
- 원 하청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 하청 노동자 작업장 순회 점검
- 원 하청 합동 안전점검 (하청 노동자 참여)
- 안전보건 교육 실시 장소제공 및 지원. 하청의 안전교육 실시 확인
-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하청사업주의 안전조치 실시확인
- 원 하청 통합 산재 관리
- 작업환경 측정 (하청 노동자 공정), 하청 노동자 참여보장

원청의 안전관리 - 벌칙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벌칙
중대재해 현장 훼손 (법 제56조 3항)	법제 17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법 제57조 1항)	법제 170조	교사 공모자 포함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 64조)	법 제 172조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현장순회점검 위반 (시행규칙 제 79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법 제 63조)	법 제 167조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원청의 안전관리 -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3회 위반	과태료		
			1회 위반	2회 위반	
산업재해발생 건수 자료 거짓 제출 (법 제10조 3항)	법 제 175조 4항 제1호	원하청 산재자료 노동부에 제출	1000	1000	1000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법 제54조 2항)	법제 175조 2항 제 2호		3000	3000	3000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 고(법 제57조3항)	법제 175조 3항 제 2호	산재 미보고	700	1000	1500
		산재 거짓보고	1500	1500	1500
관계수급인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총괄책임자(법 제62조 1항)	법제 175조 5항 제 1호	미 지정	500	500	500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2항)	법제 175조 제 5항 1호		150	300	300

원청의 안전관리 – 현장체계 구축



주소/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370 전화/055-735-6601-15 팩스/055-682-2001 http://www.dswu.or.kr

대조노조 : 제20 - 18호

2020. 5. 6.

수신 : 이성근 대표이사

참조 : HSE 추진담당, 사내협력사협의회, 고용노동부통영지청

제목 : 사고 및 산재은폐 발생에 따른 조치 건.

1. 관련근거: 1) 단체협약 제 80조 (안전보건활동) 1항, 3항
2) 단체협약 제 92조 (사내 협력회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관리)
3)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4)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2. 야드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은폐하고 재해자를 임의 조치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바

3. 지회는 2/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강력한 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위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모든 안전관리의 책임은 원청에 있는바, 공문발송 이후 적발되는 위법행위는 강력대응을 경고하오니

5. 다 시 한번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관리에 있어, 원청의 책임을 다 할 것을 당부합니다.

노동조합이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대우조선 산재 은폐 조작 드러나 “노동부도 한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고용노동부,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

거제 삼성·대우 조선소 산재사고 은폐... 민주노총의
혹제기

인원 많고 위험한데 하청노동자 산재 신청 “원청의 절반도 안돼”

또 돌아오지 못한 하청노동자... 조선소 하청 산재 은폐 의혹

[JTBC] 입력 2020-08-28 21:08

안내 ▶ 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위반 사건에 노동부 뒷짐 “권한 없으니 경찰서로 가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산재보험법만 빠져 ... 노동부는 제도개선 계획 없어



현장체계 구축사례 – 이주민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집 공고]

TAEKWONDO TRAINEE RECRUIT

- * WHO : MIGRANT WORKERS
- * WHERE : BY TOP-MART IN JANGSEUNGPO
- * WHEN : ON SUNDAYS PM 6:00 - 8:00
- * FREE TO LEARN
(POSSIBLE TO BE OVER 10 TRAINEES)
- * TAEKWONDO MASTER(Mr.Kim)
 - 010-2806-1580
(PLEASE TEXT MESSAGE)

招跆拳道学员

- * 对象 : 外国人 工人
- * 场所 : 长承浦 TOP MART 旁边
- * 时间 : 每周日 PM6:00-8:00
- * 学费 : 免费
(注, 学员人数达到十名授课)
- * 跆拳道师傅(金师傅)
 - 010-2806-1580(短信联系)

तकवेनडोसकिम डचछक कोलंगी

- * परबलेक : परबली मजदूर
- * स्थान : JANGSEUNGPO TOP-MART अगळी
- * समय : परतयक हप्तआईतबळ
6:00 pm - 8:00 pm
- * फिः नशिलक
- * परशकिष्क : 010-2806-1580
(PLEASE TEXT MESSAGE)

Tuyển võ sinh TAEKWONDO

- * Đối tượng : Người lao động
- * Địa điểm :
Cạnh siêu thị TOP MART 장승포
- * Thời gian 18h-20h chủ nhật hàng tuần
- * Miễn phí đào tạo
(10 người trở lên sẽ mở lớp)
- * Chỉ đạo viên: 010-2806-1580
(mong các bạn để lại lời nhắn)

태권도 수련생 모집

- * 대상 : 이주노동자
- * 장소 : 장승포 도서관 주변
- * 시간 : 매주 일요일 PM6:00-8:00
- * 수업료 : 무료
- * 담당: 비정규대외협력실
 - 010-2806-1580(문자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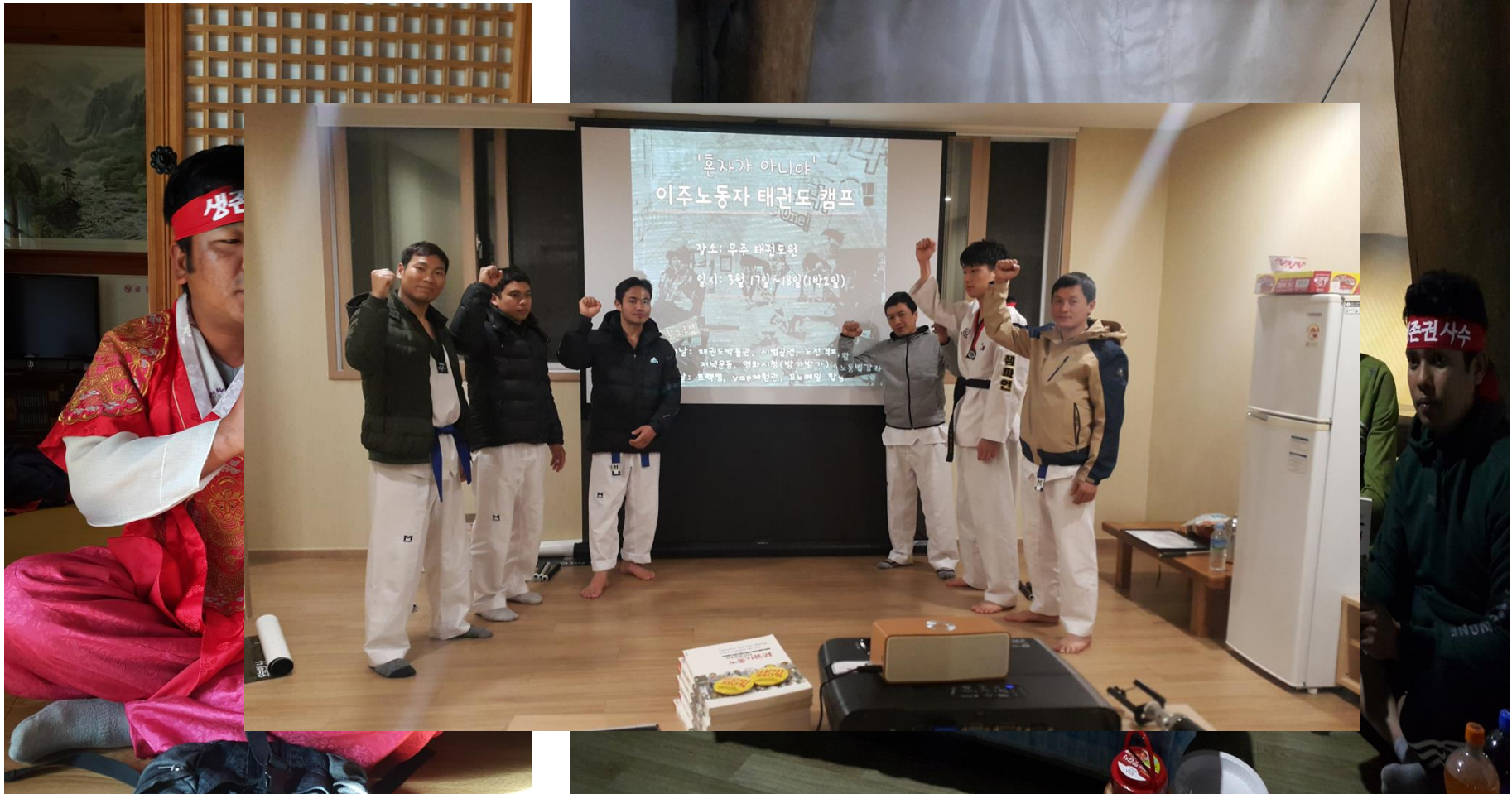


QR CORD
동영상 홍보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현장체계 구축사례 – 이주민의 노동기본권 보장



현장체계 구축사례 – 이주민의 노동기본권 보장

친구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डेउ शिप बिल्डिंग प्रवासी कामदार सर्वे
<https://goo.gl/forms/jiU51aew>

▶ Khảo sát lao động nhập cư
<https://goo.gl/forms/zlCWc10>

▶ കേരളപ്പുറംകൊല്ലംപ്രവേശകർ
<https://goo.gl/forms/5yHaOE>

▶ Myanmar
<https://forms.gle/BAst6c7P4sel>

2119에 신고할 것을 교육받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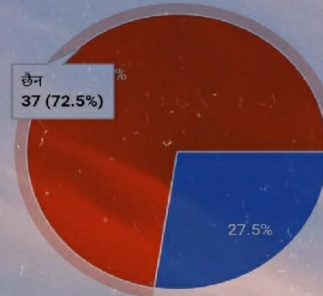
4. तपाईंको कम्पनीले घाइते भएमा 055-735-2119 मा बिना सर्त रिपोर्ट गरेको छ? (24 घण्टा आपातकालीन)

응답 51개



नेपाल

● छ
 ● छैन



전체응답 : 51명
 교육받지 못했다 : 4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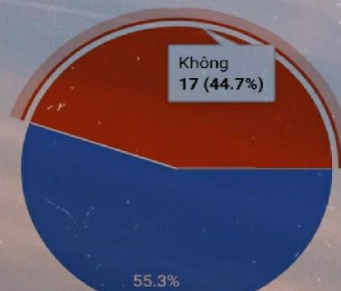
4. Bạn đã từng nhận giáo dục an toàn vô điều kiện về việc khai báo tới số 055-735-2119 khi bị thương tại công ty không? (Hoặc chờ đợi cấp cứu trong 24h)

응답 38개



베트남

● Có
 ● Không



전체응답: 38명
 교육받지 못했다: 17명



작업환경 개선사례

사례 – 청소노동자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 화장실 개조해 냄새나는 휴게실, 석면가루 날리는 휴게실



사례 – 청소노동자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 청소노동자들이 밥 먹고 쉬는 휴게실 실태조사 해 개선 요구
- 마로니에공원 청소노동자 행진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



사례 - 청소노동자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해한 환경과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6. 위생시설 등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6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아름답고 당찬 유령들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청소노동자에게 따듯한 밥한끼의 권리



사례 –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 백화점, 마트 등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허리·무릎 통증이나 하지 정맥류, 근육통 등을 앓아
- 사업주 “고객들이 직원이 서서 맞이해 주기를 원한다”는 이유



사례 –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게 의자를 놓아야 “의자 캠페인” 진행
- 노동부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 보호 대책’





사례 – 고객전용 화장실이라고요?

-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과 공공운수노조에서 백화점, 면세점, 공항 노동자들이 고객전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 먼 직원용 화장실에서 길게 줄을 서 있는 실태를 폭로
- 노동부는 고객전용 화장실을 지정하여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사업장, 세면, 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가이드)*
- 행정안전부 질의회시에서도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는 질의회시

보도자료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

☎ 보도일시: 2019.7.18(목) 오전

<인터넷 2019.7.17(수) 12:00 이후>

☎ 총 2 쪽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과 장 김동욱 (044-202-7740)

사무관 이지형 (044-202-7738)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 장 김상용 (044-202-74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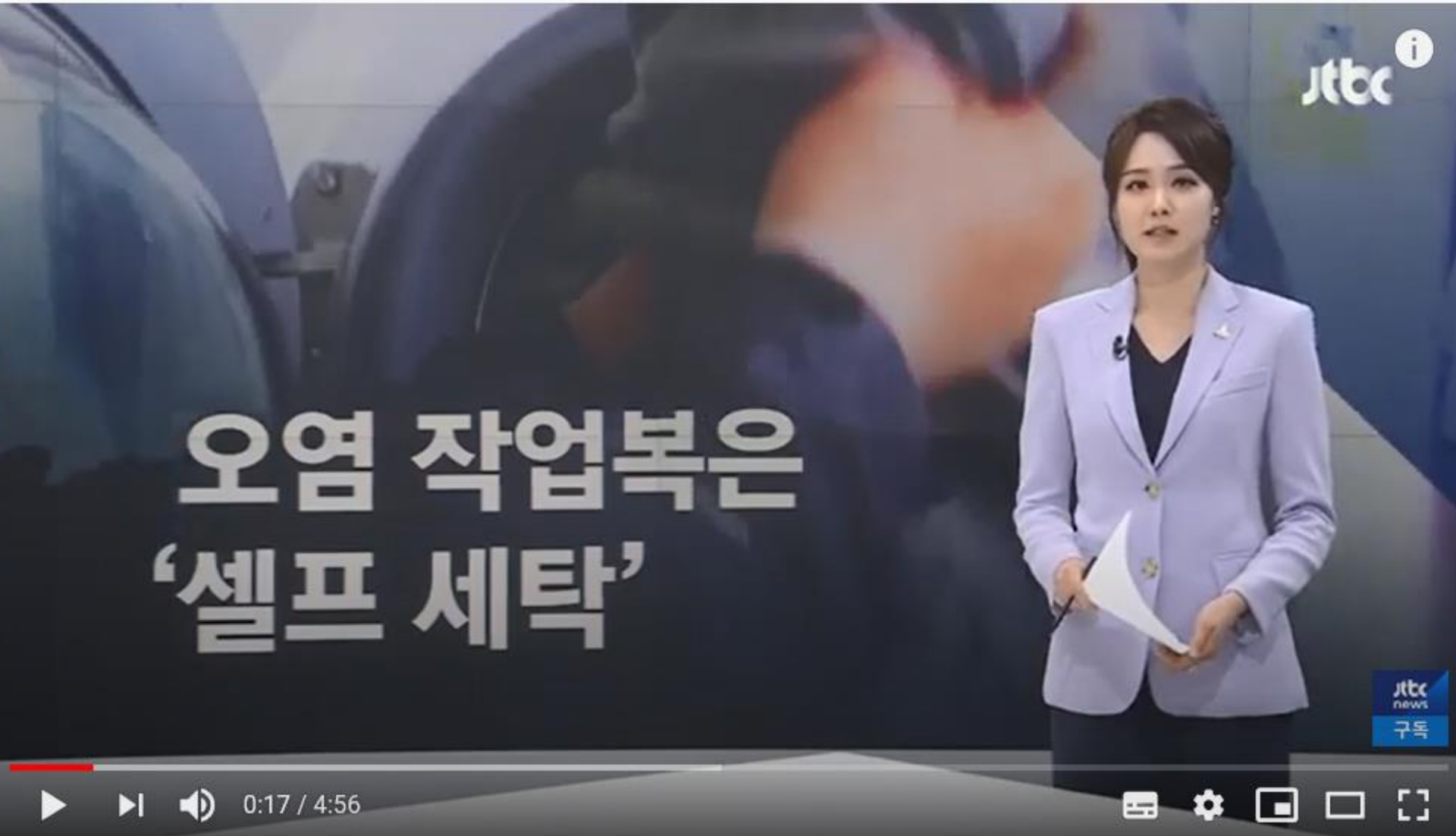
사무관 강석원 (044-202-7408)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

- ❖ 청소 노동자 사용 사업장의 세면·목욕시설 등 설치 기준 권고
- ❖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의 화장실·탈의실 등 설치 기준 제시
- ❖ 백화점·면세점 내 공용 화장실의 직원 이용 제한 금지

사례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사례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3.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사례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8조(세척시설 등)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사례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전국최초, 김해에 설치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례 - 100리터 종량제 봉투 공급중단



사례 - 100리터 종량제 봉투 공급중단

-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청소 차량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부상과 안전사고 위험
-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00여명 가운데 무려 15%에 해당하는 274명이 무거운 종량제 봉투를 수거차량에 옮겨 싣다가 부상
- 지자체별로 종량제 봉투에 무게 상한을 조례제정 하거나, 100리터 종량제 봉투 공급중단 확대
- 환경부 지침에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 종량제 봉투의 무게 상한을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명시 (100리터 종량제는 25키로 이하, 50리터 종량제는 13키로 이하)



환경미화원 골병 든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하라

환경미화원 골병 든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하라

환경미화원 골병 든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하라

환경미화원 골병 듣게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정보공개 결과 발표 및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

노동당,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원련부 경기도지자체공공기관
2024. 09. 01

Ohmy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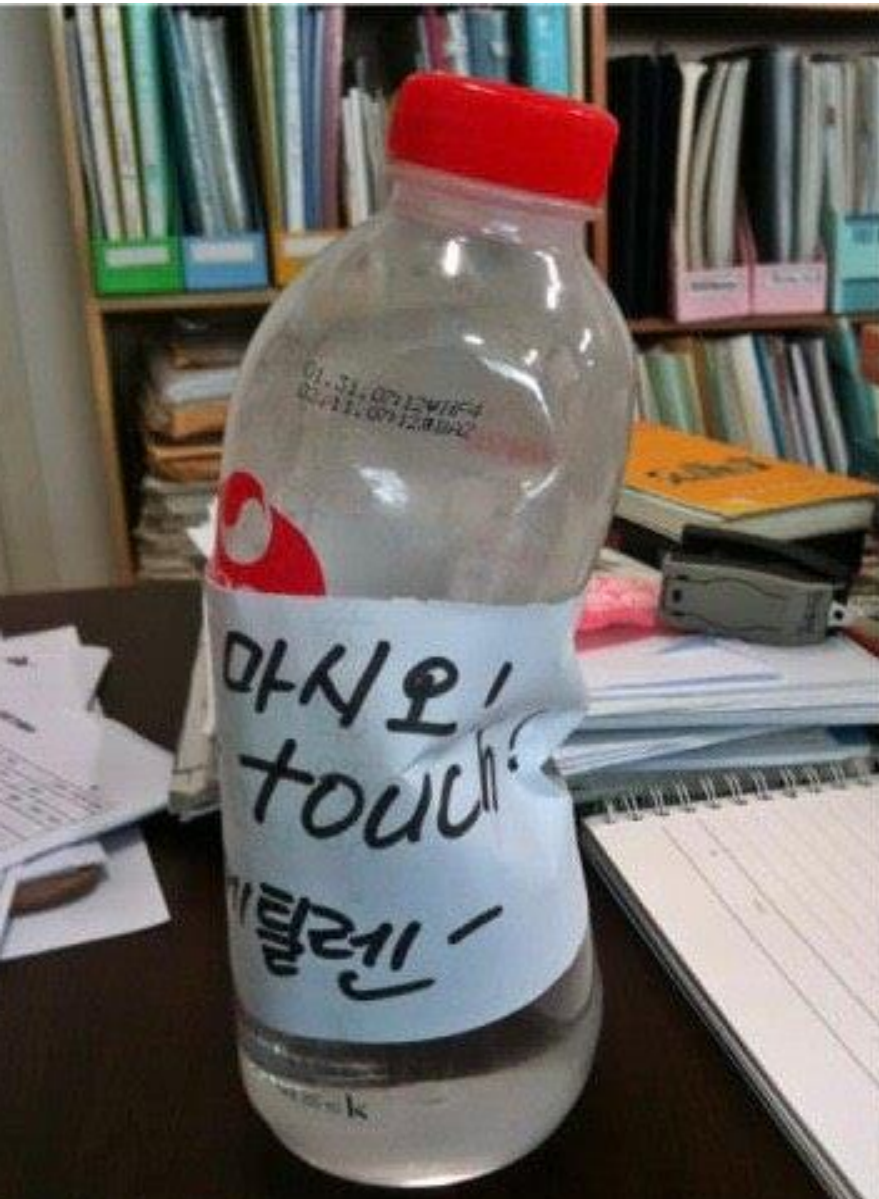
복구에서는

100ℓ 쓰레기종량제봉투 대신
75ℓ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환경미화원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워라밸을 지키고자합니다




사례 - 김해 K업체 노동환경개선 공동대응

- 스테인레스 세척과 용접, 스테인레스 절단과 연마, 페인트 스프레이 도장, cnc선반, 운반, 청소 등 거의 모든 공정에 투입되어 작업
- 세척 때마다 극심한 두통과 현기증, 가슴통증, 구역질, 심장박동 이상, 피부 작열감뿐만 아니라 몸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사고능력도 저하되는 느낌. 필리핀에 가져온 약을 복용하며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힘들게 버텨
- 상담 첫 날, 필리핀 노동자들은 사장이 쓰레기통에 버린 스티커와 세척액을 플라스틱 통에 몰래 가지고 와서 도대체 이 물질이 무엇인지 질문

사례 - 김해 K업체 노동환경개선 공동대응




염화메틸렌 (MCL, METHYLENE CHLORIDE)

신호어 : 위험


유해위험 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키면 유해함.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흡을 또는 인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 알을 일으킬 수 있음. · 신경행동에 영향을 일으킴. ·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지능장애, 기억장애를 일으킴.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독성이 있음.
예방조치 문구	<p>【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진·흙·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 눈에 닿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저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폐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p>상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시오.</p>	
<p>삼성정밀화학주식회사</p> <p>서울 서초구 서초 2동 1320-10, 삼성전자빌딩 25층 TEL. 02-2255-0816</p> <p>울산시 남구 아천동 190번지 TEL. 052-270-6441 (야간/휴일 : 052-270-6666)</p> <p>자 : 상 동</p>	


삼성정밀화학

사례 - 김해 K업체 노동환경개선 공동대응

1. 한달이상 이주노동자 면담하며 경위서 작성
2. 근무하며 사진 및 영상자료 확보
3. 기숙사 방문하여 네팔노동자들 면담
4. 김해지역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모임
부울경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민주노총부산/울산/경남본부, 금속노조울산/경남지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주민과 함께,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산노동민원상담소
5. 사업장 앞 규탄집회 + 고용노동부 출동신고
6. 노동부와 공동 근로감독실시 및 간담회 개최
7. 염화메틸렌 사용금지 조치, 위법사항 적발 및 처벌
8. 필리핀 노동자들 사업장 변경
9. 재직노동자들 통해 개선조치 유지여부 확인


코카(주)
KOCA Co., Ltd.
 TEL: 055)343-1008


동서산업

사장님!
 드럼통에 붙어 있는
 물질표지 스티커는
왜??
물레 제거해요!

드럼통에 붙어 있는
 물질표지 스티커는
왜??
물레 제거해요!

2008년 12월 29일
 환경부
 환경정책처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계
 환경정책팀

2008년 12월 29일
 환경부
 환경정책처
 환경정책실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계
 환경정책팀

노동부는 안전보건
 법에서 강제
 위험시각을
 표시해 고발하길!
 안전을 수호합시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법에서 강제
 위험시각을
 표시해 고발하길!
 안전을 수호합시다!

노동부
 안전보건
 법에서
 강제
 위험시각을
 표시해
 고발하길!
 안전을
 수호합시다!

노동부
 안전보건
 법에서
 강제
 위험시각을
 표시해
 고발하길!
 안전을
 수호합시다!

노동부
 안전보건
 법에서
 강제
 위험시각을
 표시해
 고발하길!
 안전을
 수호합시다!

노동부
 안전보건
 법에서
 강제
 위험시각을
 표시해
 고발하길!
 안전을
 수호합시다!

노동부
 안전보건
 법에서
 강제
 위험시각을
 표시해
 고발하길!
 안전을
 수호합시다!

노동부
 안전보건
 법에서
 강제
 위험시각을
 표시해
 고발하길!
 안전을
 수호합시다!

노동부
 안전보건
 법에서
 강제
 위험시각을
 표시해
 고발하길!
 안전을
 수호합시다!

276-14

무인전자경비구역
MASS
SECURITY SYSTEM
주제일안전시스템
055) 336-2552



미주와 유럽의 선진국으로 수호하며
한국 영도산업의 위상을 높였다는 코케(주)
노동자의 현실은?



11가지 치명적인 독성, 발암물질에
무병비로 노출!

근로감독관
의
책무방기가
악질사업주 양산한다!

사장님!
드럼통에 붙어 있는
물질표지 스티커는
왜??
몰래 제거하나요?

근로감독관의
책무방기가
악질사업주 양산한다!
근로감독관은
책임을 다하라!

미주와 유럽의 선진국으로 수호하며
한국 영도산업의 위상을 높였다는 코케(주)
노동자의 현실은?



11가지 치명적인 독성, 발암물질에
무병비로 노출!

코케(주)는
노동자의
그동안 힘겨운 싸움
에 대한
인정 표시로
제과!
제과!

사례 - 양산 C업체 노동환경개선 공동대응



- 플라스틱 드럼통 및 뚜껑 이드 사용
- 면 마스크 착용



세척작업에 메틸렌클로라

사례 - 양산 C업체 노동환경개선 공동대응



- 구멍난 장갑으로 스며든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화상을 입어 검게 탄 손

사례 - 양산 C업체 노동환경개선 공동대응

1. 이주노동자 상담접수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2. 병원진료 및 산재신청
3. 양산지역노동자 작업환경 개선모임 결성
4. 사업장 앞 집회 + 노동부 양산지청 출동신고
5. 노동부 고발장 제출
6. 고용센터 항의방문, 항의서한 및 규탄집회
7. 기자회견 (양산시청 브리핑룸)
8.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민주노총법률원 법적검토
9.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105개단체공동)
10. 노동청 국감(부산청)시 입구 피켓팅
11. 국감장에서 의원실에서 해당사건 제기
12. 고용노동부 작업환경 개선조치
13. 스리랑카 노동자들 사업장변경
14. 사업장변경사유 고용노동부 고시에 산재 포함

사례 – 양산 C업체 노동환경개선 공동대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드리는 질의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2015년 7월 3일

양산지역노동자 작업환경개선 대책모임 등
총 105개 단체 공동제출







사례 - 녹산공단 방사선 누출사고 공동대응

- 녹산공단 T업체 비파괴검사 차폐시설 부실로 자연 상태의 40배, 기준치의 20배 방사선 누출
- 녹산공단 방사선 누출 진상파악과 노동자건강권 확보를 위한 진상조사단 출범
녹산노동자희망찾기, 부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 부울경권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이성숙부산시의원, 여영국경남도의원, 산업의학전문의)
- 사업장 앞 기자회견 및 항의규탄 집회
- 부산시의원 면담
- 방사선 누출소식 속보 제작하여 점심시간 공단에 배포
- 노동보건단체 / 이주단체 / 민주노총부산 각 성명 발표

사례 - 녹산공단 방사선 누출사고 공동대응

- 노동부 북부지청장 항의면담 및 항의서한, 자료요구
- 고용노동부 비파괴검사 사업장 현장조사 실시
- 진상조사단은 녹산공단 비파괴검사 사업장 명단파악 사업장에 팩스 발송하고 진상조사단 밀고들이어가 조사 사업주 및 관리자 면담
- 제보전화 : 2명 노동자 증상있어 검진연결
긴급제보로 바로 달려갔으나 비파괴검사를 마친상황
비파괴검사가 이루어진 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안전조치 없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
→ 노동부 북부지청 즉시 현장조사 요구해 실시
→ 이주노동자들 특수건강검진 요구해 실시

사례 – 녹산공단 방사선 누출사고 공동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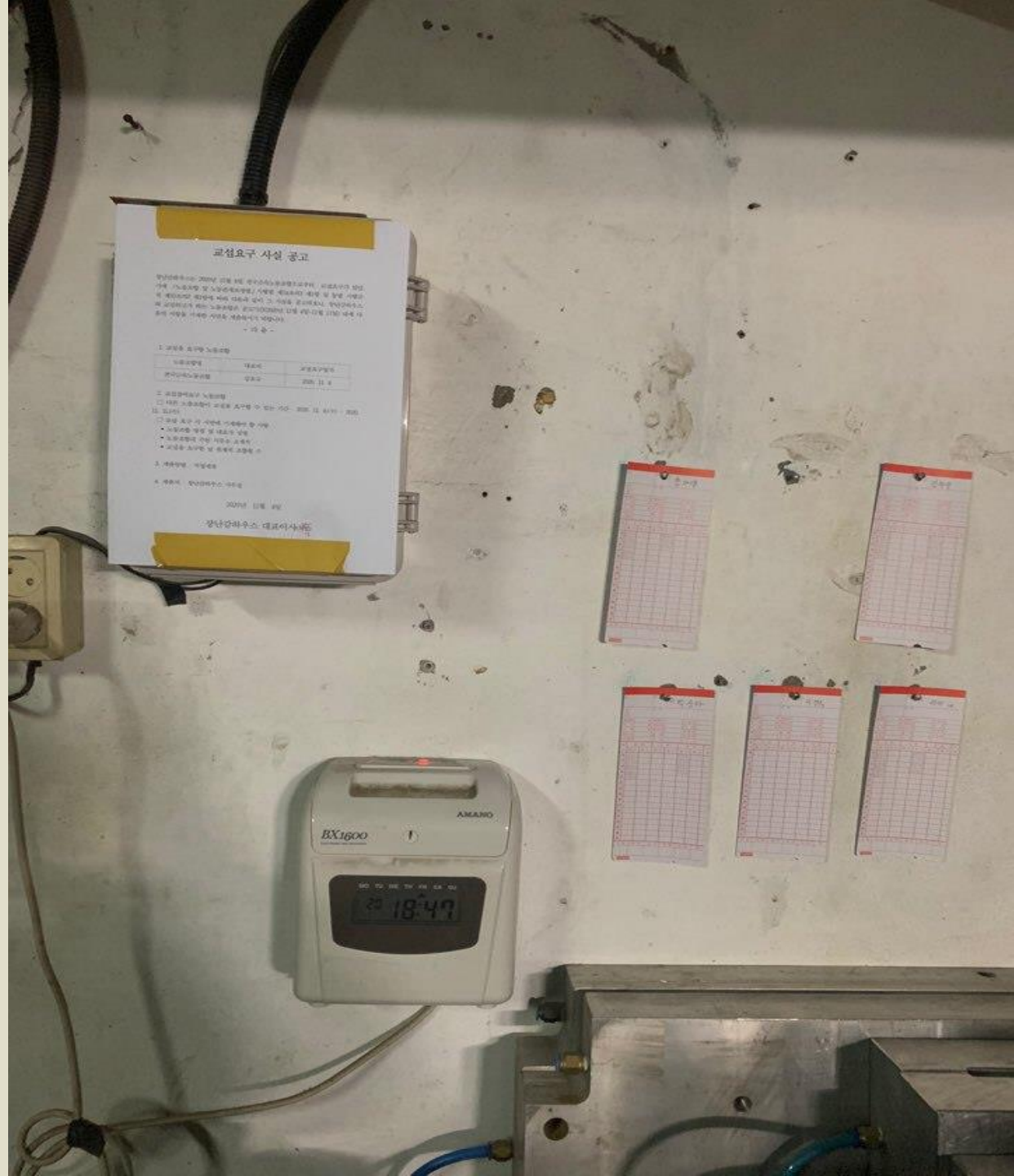


작은사

!



작은사업장도 노동조합으로 안전한 일터를!



작은사업장도 노동조합으로 안전한 일터를!



**작은사업장도
노동조합으로
안전한 일터를!**



사례 – 금속노조 서부산지회(준) 개별조합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재해율이 낮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노동조합 있는 사업장 재해율이 **24%** 낮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안전보건활동 사업
장 재해율은 절반이 낮다

노동자 참여는 산재예방의 핵심!